

# 死六臣 裁判과 그 復權

- 조선시대판 과거청산작업의 사례연구 -

沈 羲 基\*

##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김질(金漬)과 정창손(鄭昌孫)의 고발
- III. 사육신 일행의 정직한 자백
- IV. 모반자에 대한 형벌
- V. 사육신 재판 당시 실록기록자의 사육신에 대한 평가
- VI. 조경과 이선의 상소
  - 1. 1652년(효종 3년) 조경의 상소
  - 2. 1680년(숙종 6년) 강화 유수 이선의 상소
  - 3. 숙종의 결단
  - 4. 英祖와 正祖의 마무리작업
- VII. 단종복위와 생육신 우대조치
  - 1. 단종(端宗)의 복위(復位)
  - 2. 생육신에 대한 우대조치
  - 3. 장릉(莊陵) 배식단(配食壇)의 추배(追配) 문제
- VIII. 결 어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I. 문제의 제기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왕조를 창건한 신홍사대부들은 주자학을 혁명 이데올로기로 삼아 대대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혁명정책을 수행하였다. 이 정책을 필자가 굳이 ‘사회문화혁명(socio-cultural revolution)’으로 지칭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의 사회문화변혁운동은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면적인 인간개조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혁명운동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유교와 주자학은 중국인이 창안해 낸 것이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한국인들처럼 유교적이고 주자학적인 가치관을 실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실천하고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실의 사당이며 그 제례의식인 ‘종묘(宗廟)와 종묘 제례악’은 중국에서도 보존되어 있지 않아 유독 한국의 그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자가 출판되어 반유교운동을 벌이겠는가? 이 혁명운동의 성공의 열쇠는 ‘효율적인 법제도의 구축과 그 간단없는 집행’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유교적인 이상적 인간상의 전형(충신, 효자, 열녀)중에서 충신상의 전형을 사육신에 대한 재판을 소재로 추적해 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중심적인 목표는 조선시대의 과거청산작업을 사육신 재판과 그 복권과정을 소재로 삼아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추적해 보는 데 있다.

사육신과 생육신은 ‘유교적 충신상(忠臣像)’의 전형이다. 조선시대의 충신을 꼽으라면 아마도 사육신, 그 중에서도 성삼문의 절개를 가장 으뜸으로 쳐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육신 중에서도 성삼문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연구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활용하는 기초자료는 오로지 『조선왕조실록』(CD 롬)(이하 ‘실록’으로 약칭한다)에 한정했다.

## II. 김질(金磧)과 정창손(鄭昌孫)의 고발

사육신 일행의 단종복위(端宗復位)운동은 그들이 믿었던 김질과 정창손의 발설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경위를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균 사예(成均 司藝) 김질(金磧)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함께 세조에게 ‘비밀히 아뢰실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세조가 그들을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한담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상왕(上王: 단종)과 세자(世子, 세조의 아들)는 모두 어리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正道(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婦翁, 정창손)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람(權擘)·한명회(韓明澮)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대의 뜻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물으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김질과 정창손이 사육신 일행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조에게 단종복위운동을 누설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는 그 운동이 실패할 경우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단종복위운동은 세조에게 ‘모반(謀反)’을 의미한다. 모반의 기미를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지정불수(知情不首)죄에 해당되어 ‘장일백 유삼천리’에 처해진다.<sup>1)</sup> 반면에 모반사실을 인지(認知)하게 된 자가 고발(告變)하면 후한 대가를 받고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법제도는 고발자에게 고발의 동기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었던 셈이다. 실록을 읽어보면 대단히 많은 모반사건이 사전에 누설되거나 고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사육신 일행의 정직한 자백

이 재판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육신 일행이 재판에 임할 때 보여준 냉정하고 정직한 자세에 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대쪽같은 조선 선비(士)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한다. 김질과 정창손의 고변(告變)을 들은 세조(世祖)는 즉시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이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꿇어앉게 한 다음에 세조가 신문하였다. 다음은 세조와 성삼문이 주고받은 문답내용이다.

1) 아래에 인용하는 대명률, 형률, 모반조 참조.

“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  
‘칭컨대 김질과 면질(面質)하게 해 주십시오’ ”

세조가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하게 하니, 김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삼문이 말하였다.

“ ‘다 말하지 말라.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폐간(肺肝)을 보는 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내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이미 친히 묻는 것이니, 내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네 죄의 경중(輕重)도 역시 나에게 달려 있다’  
‘신은 벌써 대죄(大罪)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내가 모조리 말함이 옳을 것이다’.  
‘유응부와 박쟁(朴疇)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

세조는 이어서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고 지시하였다. 세조가 박팽년에게 신장(訊杖)을 치면서 다른 공모자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다음은 세조와 박팽년의 문답내용이다.

“ ‘성삼문·하위지·유성원·이개·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유응부·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와 신의 아비<sup>2)</sup>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성승·유응부·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제 연회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관가(觀稼)<sup>3)</sup>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 ”.

운검이란 무엇인가? 당시 어전(御殿)에서는 국왕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2품 이상의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었다. 이날 세조가 노산군(魯山君, 단종)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유응부·박쟁 등이 별운검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세조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전내(殿內)가 좁으니 별운검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세조는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

2) 성승(成勝)을 말한다.

3) 국왕이 농사의 현황을 관찰하기 위해 전토를 둘러보는 것.

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별운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음에 세조는 이개에게 신장을 치고 물었으나 그도 박팽년과 똑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응하고 순순히 자백(承服)하였다. 그러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세조는 모두를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유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찢러 자살하였다.<sup>4)</sup> 이 때 살육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후세 사람들이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응부, 유성원, 하위지 6인만을 특히 사육신이라 하여 그 충절을 기리는 것은 그들이 재판과정에서 ‘로마 법정에 선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과 달리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IV. 모반자에 대한 형벌

사육신 일행에 대한 세조의 처벌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다. 세조가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였는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 범외형벌(法外刑罰)까지 가하였는지 검증해 보자. 먼저 모반자(謀反者)에 대한 당시의 형법조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모반자는 공모만 해도 수범인가 종범인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한다. 모반자의 부자는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형에 처한다. 15세 이하의 남자와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자(子)의 처첩은 공신가에 주어 노비로 삼고 재산은 관에서 몰수한다. 남자로서 80세 이상이거나 독질자, 그리고 부인으로서 60세 이상과 폐질자는 모두 연좌를 면한다. 모반자의 백숙부·형제의 자는 그들이 호적을 같이하고 있는가 달리하고 있는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유삼천리에 처하여 안치한다. (중략) 포획한 자는 그가 민인인가 군인인가에 따라 민직 혹은 군직을 수여하고 모반자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포획자에게 준다. 모반자를 고발하여 관이 포획하게 한 자는 모반자의 재산만을 고발자에게 준다.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장일백 유삼천리’에 처한다.”<sup>5)</sup>

이제 세조의 사육신 일행에 대한 실제의 처벌을 검토해 보자.

박팽년은 옥중에서 죽었다. 의금부에서 세조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4) 이상은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2일, 경자조에서 발췌한 것이다.

5) 『대명률』, 형률, 모반대역조(조선총독부 중추원, 『대명률직해』, 1936, 385~386쪽).

“박팽년·유성원·허조(許槩)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이개·하위지·성승·유응부·권자신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허조·박팽년·유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세조는 다음과 같이 명했다.

“친자식(親子息)들은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姊妹)와 아들의 처첩 등은 극변(極邊)의 잔읍(殘邑)의 노비(奴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sup>6)</sup>

이 정도의 처벌이라면 대명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 V. 사육신 재판 당시 실록기록자의 사육신에 대한 평가

사육신 재판 당시 실록기록자의 사육신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실록기록자는 “성삼문은 성격이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위지는 일찌기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유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단종복위 운동을 꾀했다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육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간다. 한 때의 역신(逆臣)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절세의 충신(忠臣)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다. 이 과정은 사육신이 복권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이 과정을 실록기사에 주목하여 추적해 보기로 하자.

## VI. 조경과 이선의 상소

사육신(이하 ‘육신’으로 약칭한다)이 모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1456년(세조 2년)의 6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일이었다.

6)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7일, 을사.

7)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8일, 병오.

그 이후 참으로 오랫동안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에 대한 평가가 실록에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세조년간에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들을 충신으로 거론하는 것은 아마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행위’에 필적하는 위험스런 행위였을 것이다. 사육신재판이 있었던 때로부터 무려 196년과 224년이 지난 1652년(효종 3년)과 1680년(숙종 6년)에야 ‘조선의 조정에서 육신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 논의를 촉발시킨 사람은 효종 당시의 전 판서 조경(趙綱)과 숙종 당시에 강화 유수(江華 留守)로 일하던 이선(李選)이었다. 조경과 이선은 효종과 숙종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 1. 1652년(효종 3년) 조경의 상소

“전 판서 조경이 포천(抱川)에서 분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나이 일흔에 죽을 때가 다된 늙은 신하가 궁벽한 산중에서 병들어 있으므로 국가의 소식을 듣지 못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달 본현(本縣)의 저보(邸報)를 얻어 **제앙을 만나 직언(直言)을 구하시는 말씀**을 읽건대, 전하께서 천위(天威)에 크게 경동(警動)하심이 지극하다 하겠으나, 신의 마음에는 근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중략) 이어서 생각해보면, 신은 너무 늙었고 병도 이미 깊어졌습니다. 다시 당세에 쓰일 생각을 할 수 없으나 바로 군신의 분의(分義)에 감격, 직언을 구하실 때를 당하여 영겁결에 참으로 꿈속의 잠꼬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으니, 신은 실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생각이 있으니, ‘선언을 하여 세 가지를 부탁한 증자’에 비길까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충신·열사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포장(褒獎)하고 뛰어난을 정표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전조(前朝)의 사절(死節)한 신하 정몽주(鄭夢周) 등에게도 다 아름다운 시호를 주고 자손을 거두어 썼으니, 이것이 어찌 천지의 사(私)가 없는 도량으로 본조나 다른 왕조를 차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신의 어리석은 마음에 간절한 것은,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垲)·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 여섯 신하들이 천명(天命)이 돌아간 것을 모르기는 하였으나 그 섬기는 바를 위하여 죽은 대절(大節)은 뚜렷이 빛나는데 정려하는 은전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니, 어찌 겨를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명나라 문황제(文皇帝)가 방효유(方孝孺)·연자령(練子寧) 등을 정표하고 마침내 말하기를 ‘연자령이 살아 있다면 내가 등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력 황제(萬曆皇帝)가 즉위 초에 대종백(大宗伯)에게 제조(制詔)하기를 ‘고인이 된 파직되고 죄받은 제신(諸臣)은 섬기는 바에 충성하고 형륙(刑戮)을 달게 받았으니, 유사(攸司)와 소재관(所在官)을 시켜 분묘에 제사하고 생존한 후손을 후히 돌보고 등용해서 충신을 정표하여 신하의 절의를 장려하라.’ 하였습니다. (A)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도 하교하여 여섯 신하의 후손을 등용하셨으니, 넓은 덕이 신종 황제와 도리를 같이하셨습니까마는,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분묘에 제사하고 충성을 정표하여 성의(聖意)를 넓혀서 거행하지 않은 것을 한탄 할 뿐입니다. 신이 예전에 홍주(洪州)에 살았으므로 상세히 물어 보

니, 성삼문은 본디 홍주 사람인데 그 옛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합니다. 이때에 덕음(德音)을 내어 상용(商容)의 집에 정표한 것처럼 하신다면, 어찌 지하의 썩은 뼈를 위로할 뿐이겠습니까. 실로 선왕의 남은 교훈을 드날려 천하 후세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인심과 세도(世道)가 어리석고 어두워서 점점 깊은 밤중으로 들어가므로 충효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니, 신의 이 말이 교화에 조금도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유의하소서.(중략) 답하기를, ‘경이 직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이러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한다. 체념(體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sup>8)</sup>

그러나 효종은 이 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A) 부분에서 우리는 선조 년간에 사육신의 후손이 등용되기는 하였지만 사육신의 분묘에 제사함을 허용하고 그 충성을 정표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28년 후에 또 한 사람이 비슷한 상소를 하고 있다.

## 2. 1680년(숙종 6년) 강화 유수 이선의 상소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천명(天命)을 받을 당시, 황보인·김종서 같은 신하는 스스로 귀부할 수가 없었고,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같은 신하는 망령되게 옛날 국사(國史)를 분반으려고 하다가 그 자신들이 극형을 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죄인의 명단에 실려 있습니다. 저 신하들이 어찌 옛임금에게 천명이 이미 끊어졌고, 참다운 분에게 역수(曆數)가 이미 돌아간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끝내 본래의 뜻을 지키다가 죽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군신의 대의(大義)는 스스로 허물어버릴 수 없다고 여긴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조께서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때를 당하였으므로 이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세조께서도 내심으로는 그들의 지조를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B) 상시에 여러 신하에게 하교하시기를, ‘성삼문 등은 금세의 난신(亂臣)이나 후세의 충신’이라 말씀하셨고, 또 훈사(訓辭)를 지어 예종 대왕(睿宗大王)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너는 태평한 시대를 만났다. 일은 세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행적(行跡)에 구애되어 변통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이른바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깨우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조께서 병환으로 계실 적에 ‘예종 대왕이 동궁(東宮)으로 있으며 모든 사무를 결정하면서 맨 먼저 계유년(1453)과 병자년(1456)에 죄를 입었던 여러 신하를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였는데 연좌된 사람이 무릇 2백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주는 은전(恩典)이 이미 세조가 계실 때에 시행되었던 것입니다.”<sup>9)</sup>

8) 『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11월 13일, 신사.

9)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2월 22일, 정미.

밀줄 친 (B) 부분은 『세조실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때 숙종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는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네가 걱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언(進言)하는 정성은 내가 아주 가상하게 여긴다. 사육신에 대한 일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건문(建文)의 여러 신하와는 이미 차이가 있고 열성조(列聖朝)에서도 죄를 용서한 적이 없다. 그 분묘를 봉해 준다면 사림(士林)에서 존모(尊慕)하는 등의 일은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겠다. 그 밖에 별도로 은전을 베풀기는 어렵다.”<sup>10)</sup>

숙종은 아직 ‘사육신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단 ‘누군가 그 분묘를 봉해주거나 사림에서 그들에게 존모의 예를 행하여도 굳이 막을 일은 아니’라는 정도로 ‘사육신 복권사업’의 일보를 내디뎠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1691년(숙종 17년)에 숙종은 한층 파격적인 조치를 시도한다. 숙종이 사육신의 무덤과 노산 대군의 묘에 제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숙종의 이 시도는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고 만다.

“임금이 노량진을 건너 성삼문 등 육신(六臣)의 무덤이 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절의(節義)에 감동하여 특별히 명하여 관원을 보내어 사제(賜祭)하게 하고, 이어서 명하여 근시(近侍)를 노산 대군(魯山大君)의 묘(墓)에 보내어 제사하게 하였다. (중략) 사당은 강가에 있어 무덤과는 언덕하나 사이로 가까운데, 선비들이 세운 것이었다. 또 예관(禮官)이 ‘육신들은 복관(復官)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함에 따라, 전교하기를, ‘육신은 명(明)나라의 방효유(方孝孺)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곧 ‘그들을 복관시키고, 사당의 편액(扁額)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다른 대신(大臣)에게 묻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물을 필요가 없다’ 하고 결단하여 행하였으니, 매우 성대한 거조(舉措)이다. 그랬더니 승지(承旨) 목창명(睦昌明)·김원섭(金元燮)이 청대(請對)하여 번갈아 아뢰기를, ‘여러 조정에서 서두르지 않은 데에는 은미한 뜻이 있는 듯하니, 이제 쉽사리 거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힘껏 청하여 마지않으니, 임금이 비로소 전에 명한 것을 우선 멈추고 노산묘(魯山墓)의 제사만을 거행하게 하였다. 목창명이 전례를 본떠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보내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sup>11)</sup>

### 3. 숙종의 결단

그러나 3개월 후에 숙종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숙종은 우선 관원을 보내어 그들의 묘와 사당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숙종은 사당의 편액을 ‘민

10)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2월 22일, 정미.

11)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9월 2일, 계축.

절(愍節)’로 지어 하사하고, 다음과 같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주었다.

“나라에서 먼저 힘쓸 것은 본디 절의를 숭장(崇獎)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신하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절의에 죽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저 육신이 어찌 천명과 인심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인 줄 몰랐겠는가마는, 그 마음이 섬기는 바에 대하여는 죽어도 뉘우침이 없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충절이 수백 년 뒤에도 늙름하여 방효유(方孝孺)·경청(景淸)과 견주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선왕의 능(陵)에 일이 있어서 연(輦: 군주를 태운 가마의 행차)이 그 무덤 옆을 지남에 따라 내 마음에 더욱 느낀 것이 있었다. 아! 내가 어찌 아버지를 위한 의리를 모르랴. 세조께서도 이미 ‘당세에는 난신(亂臣)이나 후세에는 충신’이라는 분부를 하셨으니, 오늘의 이 일은 실로 세조의 유의(遺意)를 잇고 세조의 성덕(盛德)을 빛내는 것이다.”<sup>12)</sup>

보름쯤 후에 숙종은 예조(禮曹)에 특별히 명하여 성삼문 등 여섯 사람의 작위를 회복(復爵)시켰다.

“임금이 뜰으로 치료를 할 때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덕원(金德遠)이 아뢰는 말에 따라, 육신들의 관직을 복구하는 고신(告身)을 특별히 이조(吏曹)로 하여금 만들어서 그 자손에게 주도록 하고, 자손이 없는 사람의 것은 서원에 주어 후세에 전하도록 하되, 서원의 액호(額號)를 처음에는 민절사라고 정했다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서원이라고 고치도록 계하(啓下)하였다.”<sup>13)</sup>

#### 4. 英祖와 正祖의 마무리작업

1725년(영조 1년)에 영조는 홍양(洪陽)의 유학(幼學) 김두린(金斗麟) 등의 상소(上疏)를 받아들여 육신을 제향하는 노은 서원의 면세를 명했다.

“홍양의 유학 김두린 등이 상소하기를 ‘고을에 노은 서원(魯恩書院)이 있어 육신을 제향(祭享)하며, 성삼문의 옛날 집도 그대로 있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成勝) 및 성삼문 처(妻)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문 집안의 대대로 전해오던 장토(庄土) 12결(結)이 연산(連山)에 있었는데, 충훈부(忠勳府)에서 몰수하였던 것을 선조(先朝)에서 내어주도록 명하고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미 면제하도록 한 세금을 내도록 독촉하니, 바라건대 징수하지 말게 명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다.”<sup>14)</sup>

12)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12월 6일, 병술.

13)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12월 21일, 신축; 『숙종실록』 권24, 숙종 18년 1월 25일, 을해.

14) 『영조실록』 권4, 영조 1년 3월 4일, 임인.

이 기사에 의하면 세조년간에 몰수했던 육신의 재산을 그 후손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가 숙종 연간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에서는 기사를 찾을 수 없지만 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고 침정(僉正) 권산해(權山海)의 관직을 회복하였다. 경주(慶州)의 유학(留學) 권종락(權宗洛)이 격쟁(擊箏)하고 말하기를, (중략) ‘영종 대왕께서 선대왕의 성덕을 본받아 생육신(生六臣)과 사육신(死六臣)들에게 모두 벼슬을 추증하고 정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또 생육신들에게 시호를 주는 은전을 내리셨는데, 신의 조상의 충절도 실로 생육신·사육신과 하나이면서 둘입니다.’하였다”.<sup>15)</sup>

이 기사에 의하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영조년간에 생육신과 사육신에 대한 벼슬 추증과 정표조치가 있었던 것 같다. 육신들에 대한 복권작업은 이렇듯 ① 후손들의 관직등용 허용→ ② 육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직의 회복’(復官)과 ‘묘(墓)와 사당(祠堂)에 대한 치제(致祭)의 허용, 정표→ ③ 시호(諡號)의 수여와 사당(祠堂)의 편액(扁額) 하사→ ④ 몰수했던 재산의 반환→ ⑤ 그들을 제향하는 서원이나 사당의 전답에 대한 면세·면역조치의 순서로 진행되어 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작업은 ⑥ ‘연좌되었던 친족들의 복권’이었다. 예컨대 연좌되었던 성삼문의 친족들에 대한 복권사업은 정조 11년(1806년)에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중략) 면천(沔川) 사는 유학 성진곤(成鎭坤)이 상언하기를 ‘방조(傍祖) 충문공(忠文公) 성삼문은 사우(祠宇)를 세워 향화(香火)를 받들고 아울러 정문(旌門)을 세우는 은전을 시행하고 성삼빙(成三聘)·성삼고(成三顧)·성삼성(成三省) 등 세 사람은 신복(伸復)하는 은전을 시행할 것을 해조를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중략) ‘충문공의 방손(傍孫)이 한 사우를 따로 세우고 이어서 정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기를 청한 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묘(家廟)를 세우고 나면 주사(主祀)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인데 후손이 이미 끊어져서 불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토(田土)를 주어 향화를 받들게 하는 일에는 막히는 것이 많아서 가뵈이 의논할 수 없겠으나, 성삼빙·성삼고·성삼성 등으로 말하면 모두 충신의 아우로서 같이 연좌되었습니다. 그런데 (C) 충문공은 이미 국가의 포증(褒贈)을 받았으니 성삼빙 등도 신설(新雪)하여 주셔야 하겠습니까마는, 은전에 관계되니 모두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sup>16)</sup>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진곤(成鎭坤)의 상언에 대해서, 영의정 김치인은 『충문공(忠文公) 성삼문의 사우(祠宇)를 새로 세우는 일은 이미 육신의 서원이 있는데 이제

15)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5월 7일, 계해.

16)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 8월 17일, 임자.

또 따로 이 사우를 새로 세운다면 일이 매우 터무니없을 것입니다. 사사(私祠)라 한다면 주사(主祀)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예전에 충문공의 신주(神主)가 노출(露出)하였을 때 조야(朝野)에서 첩의(僉議)하여 마침내 선정(先正)의 논의에 따라 노은서원(魯恩書院)에 보내어 안치하였으니, 이제 감히 경솔히 다른 의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문(旌門)을 아직 거행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다만 본가(本家)에 후손이 없기 때문이니, 아예 정포(旌褒)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버려두소서. 그 아우 세 사람을 아직 신복(伸復)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궐전(闕典)에 관계되는 일이니, 해조를 시켜 상세히 살펴서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고, 좌상·우상의 의논과 판중추부사 서명선의 의논도 같고, 판중추부사 이복원은 『성충문(成忠文)의 대절(大節)은 백세(百世) 뒤일지라도 조천(祧遷)하지 않아야 옳겠습니다마는, 고례(古禮)와 국전(國典)에 친진(親盡)하여도 조천하지 않는 것은 별자(別子)의 종(宗)과 시봉(始封)의 훈(勳)만을 허가하게 되어 있으니, 이제 사판(祠板)을 이미 묻었다가 다시 냈기 때문에 사우를 세운다면 예전(禮典)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충문의 세 아우로 말하면 좌죄(坐罪)된 것이 수사(收司)에 지나지 않으니, 충문을 포증(褒贈)한 뒤에 별도로 신복하고 신복하지 않는 것을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직명(職名)이 있던 자는 해조를 시켜 복관(復官)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판중추부사 김익의 의논은 시임 대신과 같았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위의 일은 첩의에 따르고 아래 일은 이 판부(李判府)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하였다”.<sup>17)</sup>

## VII. 단종복위와 생육신 우대조치

### 1. 단종(端宗)의 복위(復位)

모반죄로 처형된 육신을 충신으로 칭송하며 복권시키면 그들이 충성을 바치고자 하였던 군주(노산군)의 명예회복문제가 자연스럽게 된다. 이것이 단종복위문제였다. 육신의 관작을 복위시킨 7년 후인 숙종 24년(1698) 전 현감 신규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

“금상(今上) 24년 무인 9월에 전 현감(縣監) 신규(申奎)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신(臣)이 삼가 옛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은 하늘이 내신성인(聖人)으로 하청(河淸)의 운(運)을 만나 화란(禍亂)을 평정(戡定)하셨으니, 하늘이 명하여 인심이 귀복(歸服)하였습니다. 노산(魯山)은 어린 나이에 보위(寶位)를 이어받았으나,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게 여겨 천도(天道)에 응하고 인사(人事)에 순종하여,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선위(禪位)함을 본받아 자리를 물려주고 별궁(別宮)으로 가시니, 상왕(上王)이라 칭하였습니다. (중략) 그 수선(受禪)한 교문(敎文)에 나아가 보면, 또한 만세(萬世)에 할 말이 있다고 하겠으나, 불행하게도 6신(六臣)의 변(變)이 뜻밖에 나왔고, 권남(權孳)·정인지(鄭麟趾) 등의 비밀

17)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 8월 29일, 갑자.

히 협찬한 의논이 또 따라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 세조로 하여금 상왕을 보호하는 은혜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6신이 복위(復位)를 도모한 계획이 마침 노산(魯山)을 해침에 족하였다고 하겠습니까.(중략) 노산군이 한 나라에 군림하심은 하루아침이 아니고 온 나라 사람이 다 사랑하여 떠받들 줄을 알았습니다. 이미 손위(遜位)한 뒤에도 오히려 상왕(上王)이라 일컬었으니, 왕호를 아직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6신(六臣)이 변란을 도모하는 거사가 없었더라면, 노산께서 그 명(命)을 고종(考終)하였을 것이니, 장제(葬祭)상 반드시 왕의 예를 쓴은 결코 의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저 6신이 천명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모계(謀計)를 하였으니, 그 화를 재촉했을 뿐입니다. 노산이 또한 다시 어찌 그 사이에 참여하였겠습니까? (중략) 성상께서 이미 6신의 절개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포탄(褒歎)을 가하시고, 그 입사(立祠)를 허락하여 빛나게 액자를 내려 주셨으니, 이것은 6신의 고충(孤忠)과 열지(烈志)가 성명(聖明)의 알아주심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백대 아래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아아, 그들은 옛주인(故主)을 위하여 절개로 죽은 여섯 신하로서 벌써 성명의 총미(寵美)한 은혜를 받았는데, 더구나 6신의 옛주인이 그 음모를 알지 못하고, 일찍이 덕에 흠도 없사온데 오히려 죽어서 그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제사에 왕례(王禮)를 쓰지 아니하니, 홀로 전하(殿)의 민연(愍然)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이제 만약 왕호를 추복하고 제사에 왕례(王禮)를 쓰며, 그 침원(寢園)을 봉하고, 수호군(守護軍)을 더 두며, 사전(祠殿)을 따로 세워서 그 의물(儀物)을 갖추어 한결같이 중조(中朝)에서 경 황제(景皇帝)를 추복한 고사(故事)와 같게 하신다면, 법제(法制)에 헤아려 볼 때에 참월(僭越)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과 참작할 때에 진실로 정례(情禮)에 합당하여 신리(神理)를 위로할 것이며, 천심(天心)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인정도 또한 반드시 흡연(翕然)할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도 신의 이 상소를 내려 널리 정신(廷臣)에게 물으시고 광전(曠典)을 추수하여 빨리 옥의(縟儀)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하고 또 크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내가 그옥이 생각하건대, 광묘(光廟; 세조)께서 처음에 노산을 존봉(尊奉)하여 태상왕(太上王)을 삼으시고, 또 명하여 한 달에 세 번씩 기거(起居)의 예를 행하게 하여 왔다. 불행한 말기의 처분은 광묘의 본뜻에서가 아니라, 그 근원을 따진다면 6신에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6신에겐 벌써 그 충절(忠節)을 포창(褒彰)하여 주었으니, 그 옛 임금의 위호를 추복함에 더욱 혐애(嫌碍)가 있을른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 경태(景泰)의 일은 비록 서로 같은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본받아 시행할 만한 것이니,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 추복(追復)한다면 더욱 광묘의 성한 덕에 빛이 있으리라고 여긴다. 아아, 일전에 올린 신규(申奎)의 상소문을 펴서 읽다가 반도 못 읽었는데, 슬픈 마음이 스스로 속에 간절하여졌다. 그러나 일찍이 중한 일을 가볍게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뜻을 가져 오지 아니하였기에 이번에 먼저 연석(延席)에서 묻게 된 것이다. (중략) 예관으로 하여금 빨리 옥의(縟儀)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sup>18)</sup>

18) 『단종실록』 권14, 부록.

## 2. 생육신에 대한 우대조치

육신이 복관조치를 받고 단종이 복위되자 세조의 왕위찬탈을 부당하다고 보고 단종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벼슬을 버리고 은둔했던 선비들도 충신으로 표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요구는 단종복위조치가 내려진 지 5년 후인 숙종 29년(1703)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생육신이었다.

“경상도 유학(幼學) 광억령(郭億齡) 등이 상소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세상을 격려하는 도리는 절의(節義)를 숭상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절의를 숭상하는 것은 보사(報祀)를 숭상하는 일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경태(景泰) 연간에 진사(進士) 신(臣) 조여(趙旅)가 함안(咸安)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숨어서 살다가, 그 지방에서 지조(志操)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또 거기에 이른바 백이산(伯夷山)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 조여의 절개가 고죽군(孤竹君)에 양보할 것이 없고, 이산의 명칭이 우주를 초월해 서로 부합되므로, 마침내 온 도내(道內)의 장보(章甫)들과 서로 모의하여 그의 영혼을 편히 모시고 그 절의(節義)를 제사지낼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서로 의논하기를 단종(端宗)께서 손위(遜位)하던 날 죽음으로 절개를 온전히 한 이로는 성삼문·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6신이 있고, 살아 있으면서 의리를 지킨 이로는 원호(元昊)·김시습(金時習)·이맹전(李孟專)·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 및 조여(趙旅) 여섯명이 있는데, 저 성삼문·박팽년 등 육신은 무덤을 한 곳에 만들고 당도 한 곳에 만들어 제향하고 있으니, 이 여섯 명도 또한 마땅히 그들의 예에 따라서 모두 제사하도록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새로 사당을 세우는 일을 금하였으므로, 감히 곧장 마음대로 시행할 수가 없어 이에 감히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러러 간청합니다. 이 여섯명의 사적(事跡)의 전말은 고(故) 장령(掌令) 신(臣) 윤순거(尹舜擧)가 편찬한 《노릉지(魯陵誌)》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근년에 장릉(莊陵)이 복위(復位)되던 날 성명(聖明)께서도 일찍이 명하시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명의 특출한 지조와 고고(孤高)한 절개는 진실로 성삼문·박팽년 등 여러 신하들과 서로 비슷하여 우열(優劣)이 없는데, 사생(死生)의 차이 때문에 그 보답을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단종대왕(端宗大王)은 보위(寶位)를 추복(追復)하였고, 성삼문·박팽년 등 여러 신하들도 묘정(廟庭)에 배향하는데, 유독 함께 충절을 지킨 이로서 배향을 받지 못한다면, 충절에 보답하는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성삼문·박팽년 등 여러 신하들은 본래 동향인(同鄉人)이 아닌데, 그 중 박팽년이 대구(大丘) 사람인 관계로 거기에 사당을 세우고 모두 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조여(趙旅)는 함안(咸安) 사람이니, 바로 그곳에 두어 칸의 사당을 지어 여섯 명을 함께 제향한다면, 새로 만드는 규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이른바 백이(伯夷)란 그 이름이 옛시대와 부합하여 천 길 높이 우뚝 서서 여섯 신하의 절개와 함께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조여(趙旅)의 사당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당에 여섯 신하를 모시어 제향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미 자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령(條令)에 구에

되지 마시고 특별히 윤택하시느 비지(批旨)를 내리시어, 이 밝은 시대의 훌륭한 은전에 모자람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열사(烈士)의 영령(英靈)으로 하여금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있게 한다면, 아름다운 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예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sup>19)</sup>

이렇게 되자 세조의 왕위찬탈 전후에 걸쳐 세조의 찬탈움직임에 부정적이었거나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세조의 왕위찬탈 당시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을 재평가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거나 응분의 표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위에 인용한 광역령의 상소는 그 시발탄에 불과했다.

### 3. 장릉(莊陵) 배식단(配食壇)의 추배(追配) 문제

정조 15년(1791)에 경기도 유생 황묵(黃默) 등이 상언하여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瓔)의 충효 대절(忠孝大節)은 육신(六臣)과 다를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창절사(彰節祠; 단종릉에 배식할 자들의 사당)에 추향(追享)할 것”을 청했다. 그러자 정조는 “화의군을 그 위치와 그 사당에 추배(追配)하는 것은 귀신의 이치로 보나 사람의 마음으로 보나 다 합당하다고 할 만하나 추배할 사람이 어찌 화의군 한 사람 뿐이겠는가? 얼마 전에 노량(露梁)을 지나다가 육신의 사당과 무덤 곁에서 한참 동안 행차를 멈추고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고, 행전(行殿)에서 묵을 때 감회를 금치 못하여 60구의 제문을 촛불을 들여오게 하여 불러주어 쓰게 하였으니, 것처럼 깊은 감회로 그와 같은 정중한 예를 베풀었다. 육신은 실로 혁혁하고 뛰어나 사람들의 이목에 젖어 있지만 금성 대군(錦城大君)과 화의군의 그와 같은 절의가 종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욱 특이하고 장하지 않겠는가?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사육신에 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이번에 추배할 때 함께 시행하는 것이 실로 절의를 권장하고 충성을 표창하는 조정의 정사에 부합할 것이다. 내각과 홍문관으로 하여금 공사간에 상고할 수 있는 문헌들을 널리 상고하여 하나로 귀결시켜 아뢰도록 하라.”고 전교하였다. 정조는 왜 이런 지시를 하였을까?

육신의 복권조치가 실현되자 세조의 왕위찬탈을 전후한 시기에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벼슬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표창해야 한다는 요구가 개별적으로 빈발하였기 때문에 정조는 이 기회에 일제조사를 거쳐 총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조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묵 등의 상소와 비슷한 상

19)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10월 13일(을유).

소가 끊임없이 재발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 같다. 정조의 지시에 응하여 내각과 홍문관은 공사(公私)의 전적을 광범히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 보고 중 생육신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지은 **김시습전(金時習傳)**에는 『노산군(魯山君)이 순위할 때 시습은 마침 삼각산(三角山) 속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곧 문을 닫고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자기 책을 모두 태워버리고 절간에 자취를 의탁했다.』 하였습니다. **고 정승 신 신흠(申欽)**이 지은 **산중독언(山中獨言)**에는 『남효온(南孝溫)이 소릉(昭陵)을 복위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열경(悅卿)을 중유하였다. 열경이 말하기를 ‘공은 나와 다른데 어째서 세도(世道)를 위해 벼슬할 계책을 도모하지 않는가?’ 하니, 효온이 말하기를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를 보아도 늦지 않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고 감사 최현(崔暉)**이 지은 **이맹전전(李孟專傳)**에는 ‘경태(景泰) 갑술년(1454) 즈음에 시사가 크게 변하자, 소경과 귀머거리로 행세하면서 친한 벗들을 사절하고, 매월 초하루에는 항상 아침해를 향해 절을 하며 내 병이 낫기를 빈다고 말했는데, 집안 사람들도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고 판서 신 이재(李穡)**가 지은 **조여(趙旅)의 비명**에는 ‘경태 계유년(1453, 필자주)에 진사가 되었는데, 하루는 여러 유생들과 작별하고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숙종 기묘년(1699, 숙종 25년, 필자주)에 영남의 선비들이 공의 절의를 보고하니 특별히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으며, 사당을 함양(咸陽) 백이산(伯夷山) 밑에 세우고 김시습·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과 함께 배향하였다.’ 하였습니다. **고 정승 신 최석경(崔錫鼎)**이 지은 **원호의 묘갈명**에는 ‘단종이 영월로 순위한 뒤에 영월 서쪽에 집을 짓고 새벽과 저녁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을해년에 3년 상복을 입은 뒤 고향집으로 돌아가 문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앓을 때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앓고 누울 때도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두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무인년(1698, 숙종 24년: 필자주)에 (단종이: 필자첨가) 복위한 뒤 의리와 절개로 인해 공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었다.’ 하였습니다. **선정신 성훈(成渾)**이 지은 **잡저(雜著)**에는 ‘성담수는 지극한 정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아버지의 묘소 아래 숨어살면서 일찍이 서울에 올라간 일이 없었고 벼슬을 제수 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당시 제현들이 혹은 죽기도 하고 혹은 살아 있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그 처한 상황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고 순절하거나 은둔하여 선왕(先王)에게 충성을 바친 의리에 있어서는 살았건 죽었건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중략) 김시습·남효온·이맹전·조여·원호·성담수 등 6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인데 혹은 방랑생활로 그 자취를 감추거나 혹은 은둔해 살면서 몸을 깨끗이 하였으니, 그 충성과 그 절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사당에다 함께 제사지내는 것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뛰어난 자로서 김시습은 세종의 특별한 신임에 감격하여 미친 사람처럼 종적을 숨기고 절간에 몸을 의탁하였으며, 남효온은 소릉(昭陵)의 복위를 요청하고 육신의 전기를 지으면서 그 내용을 완곡하게 쓰고 자기 뜻을 고수하였으니, 그들의 고심과 아름다운 절의는 영원토록 사람들을 격려할 만합니다. 이 때문에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에 ‘만약 매월당(梅月堂)과 남 추강(南秋江)을 여기에 제사지내고 또 사당 옆에 한 제단

을 만들어 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叟) 등을 함께 제사지내기를 공주(公州)의 동학사(東鶴寺)에서처럼 한다면 일이 완비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육신(六臣)을 한꺼번에 모두 제사지내는 것을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선정(先正)이 이미 정한 논의에 따라 김시습과 남효온 두 사람을 추향(追享)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홍문관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들이 공사간의 문헌을 가져다가 절의가 가장 현저하고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들을 가려낸 결과 육신과 금성 대군·화의군 이외에도 순절하거나 은둔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릉지에 보이는 자만도 거의 1백여 인이 넘지만 이름만 있고 행적은 없어 대부분 상고하기 어렵고 단지 뚜렷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청간공(淸簡公) 김시습**은 5살에 신동이라 하여 세종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고 단종이 손위한 뒤에는 절간에 의탁하여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말하기를 『절의를 높이 세우고 윤리 강상을 부식한 것은 비록 백대의 스승이라 해도 근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남효온(南孝溫)**은 18세에 글을 올려 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하고 드디어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일찍이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죽음을 아껴 대현들의 이름을 인멸시키겠는가.』 하였습니다. **정간공(貞簡公) 원호(元昊)**는 집현전 직제학으로 단종 초년에 원주에 은퇴하여 살다가 단종이 승하하시자 영월로 들어가 삼년상을 지냈으며 세조가 특별히 호조 참의를 제수하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숙종 24년 무인년(1698)에 특별히 그의 마을에 정문을 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정숙공(靖肅公) 성담수(成聃壽)**는 교리 성희(成熹)의 아들입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의 잡저(雜著)에 ‘희가 성삼문의 사건에 연좌되어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 담수는 지극한 정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파주(坡州)에 물러가 살았는데, 그 당시 죄인의 자제들에게 으레 참봉을 제수하여 그 거취를 시험하였을 때 모두 머리를 숙이고 벼슬 살이를 하였으나 유독 담수만은 끝내 벼슬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전하의 갑진년(정조 8년, 1784, 필자주)에 증직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간공(淸簡公) 이맹전(李孟專)**은 일찍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으로 뽑혔으나 경태(景泰) 갑술년(1454년, 필자주)에 귀먹고 눈멀었다고 핑계하고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신축년(정조 5년, 1781, 필자주)에 시호를 추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절공(貞節公) 조여(趙旅)**는 태학생(太學生)으로 단종이 손위하게 되자 여러 유생들과 하직하고 함안군(咸安郡)으로 돌아가 은둔하여 소요 자적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숙종 28년 임오년(1702; 필자주)에 특별히 이조 참의를 추증하였고, 전하의 신축년(정조 5년, 1781; 필자주)에 이조 판서로 올려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중략) **《갱장록(羹牆錄)》 화속편(化俗篇)**을 상고해 보니 **고 집현전 부제학 조상치(曹尙治)**는 『세조가 일찍이 박팽년 등을 논평하여 당대의 역적이고 후세의 충신이라고 했다.』 하였고, 그 아래에 『부제학 조상치가 상소하여 치사를 요청하니 백관에게 명하여 도성 문 밖에서 전별하도록 하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sup>20)</sup>

20)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2월 21일(병인).

## VIII. 결 어

육신들이 완전히 복권되는 데에는 무려 126년(1680-1806)의 세월이 흘렀다. 육신이 처형된 때(1456년 6월 2일부터 8일 사이)로부터 기산하면 무려 350년의 장구한 세월이다. 사육신에 대한 복권을 소재로 하여 조선시대의 과거청산작업을 일별해 보려는 필자의 의도는 이 글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일 줄 알고 시작했는데 막상 작업을 진척시키다 보니 깊어 보아야 할 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단 기초연구를 행한다는 쪽으로 문제의식을 축소시키고 검토의 범위도 사육신과 생육신문제에 한정했다. 제대로 된 연구를 하자면 단종복위문제를 상세히 검토해야 했으며 과거청산작업에 임하는 군주의 입장과 신하들의 입장 사이에 드러나는 미묘한 갈등과 대립상황까지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이 글에서 그런 분석이 행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후일을 기약하고 싶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과거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 그 작업들은 대단히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축소되기도 하고 용두사미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한탄을 불러 일으킨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청산작업은 대단히 어렵고 미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 그런 측면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과거청산작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투쟁의 과정이요, 의식개혁운동, 사회문화혁명운동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선시대의 과거청산작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거청산작업에 대한 반성적 이해’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그런 모습이 실증성 있게 잘 묘사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다른 역사연구자들이 필자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조선시대판 과거청산작업들’에 대한 또다른 사례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